

사회관계장관회의	
회 차	2020 - 19 (2호)
안전유형	심의

---

#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개선방안

---

2020. 11. 20.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I. 추진 배경 .....	1
II. 현황 및 문제점 .....	2
III. 조사기준 정비방안 .....	5
IV. 기대효과 .....	10
V. 향후계획 .....	11
[참고1] 표준화 유형 군별 사업목록 (복지부) .....	12
[참고2] 소득재산조사 표준화 최종조정안 .....	13

# I

## 추진 배경

□ 사회보장사업(20년 중앙부처 357개)이 필요와 상황에 따라 부처(서)별로 분산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방식이 제각각 설계

① 국민이 복지제도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 (국민) 내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등을 알기 어려움

\*\* (지자체 담당자) 신청인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따로 자산 조사를 거쳐야 안내 가능

② 사회보장급여의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갈수록 복잡해져 업무처리 효율성 저하, 수기조사 항목\*이 많아 지자체 행정력 소모

\* 전체 소득재산조사 항목 중 수기처리 항목이 54.2%에 달함

< 소득재산 자료 연계, 수기처리 현황 >

구분	총합	소득	재산	공제	부채
총합	216	85	50	70	11
공적자료 연계 항목수 (비율)	99 (45.8%)	45 (52.9%)	35 (70.0%)	17 (24.3%)	2 (18.2%)
수기처리* 항목수 (비율)	117 (54.2%)	40 (47.0%)	15 (30.0%)	53 (75.7%)	9 (81.8%)
자료미연계	111	39	13	52	7
참고자료	6	1	2	1	2

\* 수기처리 유형 : ▲자료 미연계(어업소득 등), ▲일부정보만 확인 가능(분양권 등 보유 여부만 확인 가능하고, 가액은 확인 곤란), ▲공적자료 부존재(3개월 이상 의료비 등)

- 향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를 최대한 자동화해 서면업무를 줄이고, 자격관리도 효율화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기준 정비가 필요

\* 시스템이 공적자료를 분석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복지멤버십), 개인의 소득·재산 수준과 선정기준 간 차이가 큰 경우 시스템이 조사·판정하여 수기조사 없이 조사를 종료(쑈자동 조사)

- (현황) 복지대상자 선정방식은 ▲**자격확인 방식**, ▲**소득재산조사 방식**  
 (①소득인정액, ②소득·재산 분리평가(cut-off), ③건보료기준 판정)이 존재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 자료를 기초로 **보장가구(조사 및 지원 단위)를 구성하고 인적 및 소득·재산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 예시 : 복지대상자 선정방식 비교 >

- ▲ **‘자격확인’ 방식**은 신청자가 기초생활보장·차상위 등의 자격이 있으면 대상자로 인정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선정
- ▲ **‘소득인정액’ 방식**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소득인정액으로 환산 후 소득인정액이 소득기준선 이하면 대상자로 인정
  -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4인기준 약 142만, ‘20년 기준) 이하인 경우
  - ※ 소득·재산평가 분리방식은 (소득평가액<소득기준선), (재산평가액<재산기준선)을 충족해야 함
- ▲ **‘건보료 기준’ 방식**은 신청가구 합산 건보료를 확인하여 선정기준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대상자로 인정
  - \*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건보료 126,909(직장) 118,150(지역), 128,407(혼합) 이하인 경우

- (문제점) 소득재산조사의 경우, **사업마다 조사방식\*이** 다르고 공무원의 서류확인을 통한 **수기조사 항목이 많아 개선 필요**

\* 조사대상범위(가구구성), 조사항목, 재산의 소득환산여부 및 환산방식 등

- **동일 가구라도 사업별 조사방식(조사항목, 공제기준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 차이 발생**
  - \* (북한이탈주민 모자사망사례) (구)아동수당 신청 당시 소득재산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없었음에도 기초생계급여 등으로 연계되지 못함
  - ※ 현재 아동수당은 보편적 사업으로 소득재산조사 대상사업이 아님

**<소득인정액 방식 예시>**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사업별 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공제-부채)× 소득환산율]

예) 중소도시에 사는 6인 가구, 근로사업소득 158만원, 이전소득 4만원, 일반재산 70백만원, 금융재산 5백만원

구 분	(구)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기준	(기본재산공제) 중소도시 8500만원 (금융재산공제) 2000만원 (소득환산율) 연4% (월 0.34%)	(기본재산공제) 중소도시 3,400만원 (금융재산공제) 500만원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월4.17%, 금융재산 월6.26%
소득평가액 (A)	0원 * 전액 소득공제	92만원 * 소득공제 7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B)	0원 * 전액 재산공제	150만원 * (70-34)백만 ×4.17%
소득인정액 (A+B)	0원	242만원

- (조사대상)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구구성 등 조사 대상범위 차이

**< 사업별 조사대상 가구구성 비교 >**

구분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가구구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 (조사항목) 복지사업이 필요와 예산상황에 따라 사업의 대상·기준·규모 등이 제각각으로 설계되어 사업마다 소득재산조사 항목 상이

**< 기초생활보장 vs 기초연금 (예시) >**

구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조사항목 수	177 개	77 개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자활근로소득	○
	공공일자리소득	○

\* (예) A씨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매월 20만원 소득 발생

→ 근로 소득 20만원을 (기초생활) 소득에 포함/ (기초연금) 소득에 미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유사한 사업간에도 기본재산공제, 재산환산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다양

구분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기본재산공제	▪ 대도시 6,900만원	▪ 대도시 13,500만원	▪ 대도시 6,900만원	▪ 대도시 13,500만원
재산환산율	▪ 금융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금융재산 월 6.26%	▪ 금융재산 월 4.17%

\* 기초연금 금융재산 환산율 월 0.33%

- (수기항목) 조사사항에 관한 공적자료가 없거나, 시스템을 통해 자료가 연계되지 않아 수기처리하는 항목\*이 다수(전체 항목(216개) 중 117개가 수기)

\* (자료미연계) 어업소득, 주택연금, 지자체지원, 양육휴직수당, 진폐위로금 등 (일부정보만 확인)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은 보유여부만 확인가능, 가액은 확인곤란 (공적자료 부존재)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 의료비 등

- (건보료 방식의 한계) 정확한 소득과약이 곤란\*하고, 부과체계개편\*\*으로 일부 지역가입자의 소득추정이 불가하여 소득재산조사방식으로 전환필요

\*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소득수준과 연계해 추정 중으로 정확성이 낮으며, 지역가입자 약 30%(최저보험료 납부)는 건보료로 소득추정 불가(기준중위소득 65%이하 판정곤란)

\*\* 2차 개편('22)시 지역가입자 하위 54%의 소득구간 판정곤란(기준중위소득 106%미만 판정곤란)

- 직장가입자 재산 미반영, 지역가입자 소득추정의 어려움 등으로 신청가구의 소득수준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과소 또는 과다 추정 가능

#### < 그간의 추진경과 >

- 정책연구\*, 자문단 구성·운영('19.4.~) 등을 통해 소득재산조사 표준화안 마련
  - \* ①사회보장사업 선정체계 및 자산조사 표준화 방안(보사연, '19.5~11.), ②건강보험료 활용사업 소득·재산조사 개선 방안(정보원, '19.4~7.), ③소득재산조사 표준화 유형별 수급 변동 심층 분석('20.3~11.)
- 범부처 설명회 및 지자체 설명회('20.1.)를 통해 표준화안 공유, 현안조정협의회, 사회보장제도분과회의 등 부내회의를 통해 표준화 관련 쟁점 논의('20.6)
- 쟁점을 중심으로 추가 시뮬레이션 진행, 관계부서와의 협의('20.7.~20.10.)

## 1

## 기본방향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을 계기로 서면업무부담을 줄이고, 자격관리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업무자동화를 위한 기준 정비 추진
- (유형군 분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복지부 내 주요 복지사업을 사업목적, 대상자 범위, 급여성격을 고려하여 4가지 유형군으로 분류
  - (유형군 내 관리 원칙) 조사항목, 기본재산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일치시키되, 선정기준선, 가구 구성\* 및 공제는 자율 결정
    - \* 사업목적에 따라 지원범위와 조사대상 범위가 결정되므로 일률적 조정 곤란
  - (적용방법) 기존 사업은 영향도가 낮은 조사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조정, 신규 사업은 설계단계에서 4개 유형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운영
- (조사항목 조정) 수기조사 항목을 중심으로 반영 필요성, 조사실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항목을 선정
  - 조사항목의 성격, 보유빈도, 평균 보유금액 등을 고려하여 소득 반영 여부 검토, 조사 유지시 추가 자료연계 등 검토
    - ①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 특정 목적 소비를 위한 항목은 현재 소득반영 후 공제방식으로 처리 중으로 소득항목에서 제외
    - ② 수기조사 항목 중 빈도가 낮다 하더라도 금액이 크고, 사업취지상 반영해야 하는 항목은 유지(예시: 기타증여재산)
    - ③ 육아휴직수당 등 일부 항목 추가연계, 기존 자료연계 방안 개선 또는 자료입수 주기 단축 등 조사효율화 병행 추진 중

- (유형군별 조사기준 정비) 유형군마다 표준화된 조사방식·기준 마련
  - 자산조사가 엄격한 ①기초생활보장사업군에서 ④바우처형사업군으로 갈수록 소득재산조사 범위 축소, 공적자료 중심 조사비중 확대

< 4개 유형군 별 표준화(안) >

구분	자산조사 엄격성		기본재산 공제 (금액은 '20년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월)
	높음 ↑ ↓ 낮음	조사항목		
(1유형) 기초생활보장사업군		170여개	대도시: 69백만 중소도시: 42백만 농어촌: 35백만	주거용: 1.04% 일 반: 4.17% 금 용: 6.26% 자동차: 100%
(2유형) 차상위사업군		110여개	대도시: 135백만 중소도시: 85백만	1%(예시) ※ 자동차 별도 검토
(3유형) 기초연금형 사업군		70여개	농어촌: 72.5백만	0.33%
(4유형) 바우처형 사업군	30여개	없음	0.33% ※ 소득·재산분리평가 (cut-off) 시 미적용	

※ 기본재산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예시로, '22년 이후 개선할 계획

## 2 세부 조정방안

### (1유형군) 기초생활보장사업군

- (대상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본인부담경감사업\*
  - \* 사업의 성격, 취지, 혜택 등을 고려시, 의료급여의 연장선상에 있어 1유형 군으로 분류
- (조정방안) 가장 엄격한 조사가 필요해 수기조사 포함 약 170개 조사 항목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유형으로 현행체계 유지
  -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개별적인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사업별 소득·재산조사 항목수 비교 >

구분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계	174	174	173	172	164
소득	76	76	75	74	70
재산	46	46	46	46	46
공제	45	45	45	45	42
부채	7	7	7	7	6



## (2유형군) 차상위사업군

- (대상사업)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계층확인
- (조정방안) 단계적으로 현행 150~166개 조사항목에서 약 110여개로 간소화('21년~)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단일 환산율로 조정('22년 이후)
  - (기초연금) 일부 사업에만 반영\*하던 기초연금은 생활안정 목적의 정기적인 급여이므로 소득조사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표준화
    - \* (기존)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산형성 사업만 반영 → (조정) 4개 사업 모두 반영
  - (양육휴직수당) 보유빈도가 적으나 금액이 크고(최고 250만원), 정기적인 소득이므로 지속 반영하되, 공적자료 신규 연계 검토
  - (형평성 고려) 보유 가구수가 적더라도 금액이 큰 보훈급여, 기타 증여재산, 조합입주권, 분양권, 회원권 등 항목은 반영 유지
    - \* 보훈급여 : 종류에 따라 월 최대 8백만원 지원 가능
    - 조합입주권 · 분양권 등 : 수급자 중 1억원 이상 보유한 사례 존재
  - (특정소비를 위한 항목 제외)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특정 목적 소비를 위한 항목\*은 해당 목적으로 지출이 불가피하여 소득으로 미반영
    - \* 장애(아동)수당, 소년소녀가정지원금, 아동양육비(한부모), 입양아동양육수당 등

### < 사업별 소득·재산조사 항목수 비교 >

구분	차상위 계층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자산형성	차상위 장애수당	표준화	조사항목
계	150	166	164	160	110	
소득	54	68	68	67	35	(주요항목)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제외항목) 장애(아동)수당, 지자체지원(교통수당, 복지대상자추가지원 등) 등
	(수기14)	(수기 27)	(수기29)	(수기25)	(수기 7)	
재산	46	46	46	46	42	(주요항목) 건축물/주택/토지, 회원권, 금융재산 (제외항목) 동산(가축, 종묘 등)
	(수기12)	(수기12)	(수기12)	(수기12)	(수기8)	
공제	44	45	43	40	27	(주요항목) 민생질환자 3개월이상 지출의료비, 만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근로 및 사업소득 등 (제외항목) 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한부모),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소득반영후 공제)
	(수기29)	(수기32)	(수기29)	(수기26)	(수기23)	
부채	6	7	7	7	6	(주요항목)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사채 (제외항목) 신용카드 연체금
	(수기4)	(수기4)	(수기4)	(수기4)	(수기4)	

### (3유형군) 기초연금형 사업군

- (대상사업)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준선이 높아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보편적 지원에 가까운 사업 군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조정방안) 70여개 조사 항목 유지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치료 보조와 함께 생계보조 성격이 있음을 감안하여 소득에서 제외
    - \* 현재 소득으로 반영 후 공제하는 항목
  - (보훈급여) 보유빈도는 낮으나(수급자의 1% 미만) 금액이 크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 소득으로 반영하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 등은 소득에서 제외하는 현행방식 유지
  -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보유빈도는 낮으나, 기타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득으로 반영 유지

< 사업별 소득·재산조사 항목 수 비교 >

구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표준화	조사항목
계	77	76	75	
소득	23	23	22	(주요항목)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국가유공자급여(보상금), 독립유공자급여(보상금)
	(수기1)	(수기1)	(수기1)	(제외항목) 고엽제 후유의증수당(소득반영후 공제)
재산	40	39	40	(주요항목) 건축물/주택/토지, 회원권, 금융재산, 자동차 등
	(수기8)	(수기8)	(수기8)	
공제	7	7	6	(주요항목) 이자소득공제, 상시근로소득공제, 일반재산 자연감소분, 금융재산자연감소분, 한센인피해자국가보상금
	(수기6)	(수기6)	(수기6)	(제외항목) 고엽제 후유의증수당(소득반영후 공제)
부채	7	7	7	(주요항목) 대출금, 임대보증금, 개인간사채, 공공기관대출금
	(수기4)	(수기4)	(수기4)	

## (4유형군) 바우처형 사업군

- (대상사업) 건보료 소득판정 기준 활용사업, 지자체 사업 등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결식아동급식지원, 발달재활서비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등
- (조사모형) 공적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약 30여 개 조사항목을 활용하되 소득인정액 방식, 소득·재산평가 분리 방식(cut-off)으로 구분('22년~)
  - (원칙) 수기처리, 직권처리 비율이 높거나, 연계 공적자료 중 정확도가 낮은 항목은 조사업무 및 행정부담 증가로 제외
  - (금융재산 및 부채) 조사기간, 행정비용 등 고려하여 조사 제외
    - 금융조사 도입시 가구원 전체에 대한 개인별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수집, 조사기간(건당 2~5주) 등 현행 방식에 비해 행정비용 증가
      - \*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하는 사업은 단기간·일회성 지원을 위한 (예산)사업인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상자 선정 중요
    - 금융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개별법상 사업 및 금융조사의 근거가 필요하나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산사업으로서 근거마련 곤란
      - \* 관련 항목: 이자소득(금융기관), 배당소득(금융기관), 금융재산, 부채 등
    - 현행 건강보험료 조사방식은 금융재산·부채 미고려 효과
  - (분양권, 회원권 등) 보유빈도는 낮으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취득 여부는 전산확인이 가능하므로, 확인시 반영할 수 있는 항목으로 운영

### < 소득·재산조사 항목 >

구분	표준화	주요항목
계	38	
소득	14 (수기0)	상시근로자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재산	21 (수기2)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항공기, 자동차,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회원권 등
공제	3 (수기1)	만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만 24세 이하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 IV

## 기대효과

- 소득재산조사 표준화를 통해 사업기준, 조사항목을 간소화하고 건보료 기준을 대체할 방식을 보완함으로써,
  - (국민) 기준 단순화로 방대한 복지사업을 쉽게 이해 가능하며, 유사한 사업의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 및 신청 가능하여 급여 접근성 제고
  - (지자체) 수기항목이 줄어 소득재산조사에 대한 지자체 행정부담 경감 및 잠재적 수급 가능한 사업을 안내 가능하여 사각지대 축소
  - (시스템) 공적 자료 중심으로 간소화되어, 수기작업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조사, 판정이 용이해짐
- \* 전체 조사항목(216개) 중 수기조사 항목은 117개로, 표준화 시 유형군별로 수기항목 중 최대 114개 제외(4유형군 기준, 수기항목 3개)

### < 소득·재산조사 수기항목 조정 결과 >

구분	조사항목					
	소득	재산	공제	부채	합계	
기초생활보장 사업군 (현행유지)	78 (수기 34)	46 (수기 12)	46 (수기 32)	7 (수기 4)	177 (수기 82)	
차상위 사업군	이전	72 (수기 29)	46 (수기 13)	47 (수기 33)	7 (수기 4)	172 (수기 79)
	이후	<b>35</b> (수기 7)	<b>42</b> (수기 8)	<b>27</b> (수기 23)	<b>6</b> (수기 4)	<b>110</b> (수기 42)
기초연금형 사업군	이전	23 (수기 1)	40 (수기 8)	7 (수기 6)	7 (수기 4)	77 (수기 19)
	이후	<b>22</b> (수기 1)	<b>40</b> (수기 8)	<b>6</b> (수기 6)	<b>7</b> (수기 4)	<b>75</b> (수기 19)
바우처형 사업군 (신규 유형)	14 (수기 0)	21 (수기 2)	3 (수기 1)	-	38 (수기 3)	

## ① 복지사업 선정기준 관리

### ○ 사업의 유형군 분류 추진

- (신규사업) 사업 신설 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 과정에서 소득재산조사 4가지 유형군 중 선택하도록 운영
  -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 장이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타당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 (기존사업) 유형군 분류에 따라 유형군 별 표준화된 소득·재산 조사 항목 적용('21), 기본재산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개선('22년 이후)
- (미분류사업) 기존 사업 중 4가지 유형군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유형 분류

## ② 추진일정

- 소득·재산 조사항목 조정안 확정 및 주요사업 유형분류, 적용계획 등 사업부서 협의('20년), 관련 규정(지침, 법령 등) 개선방안 검토('20~'21)
- 소득·재산 조사항목의 표준화 적용('21)
  - 복지부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수급자 변동 및 예산 변동이 크지 않은 소득·재산 조사항목 등을 중심으로 정비
  - 중앙부처 주요사업 유형분류 및 표준화 적용방안 협의
  - 기본재산 공제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개선방안 논의
- 기본재산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개선('22년 이후)
  - 유형군 별 기본재산 공제 규모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조정안 마련 및 적용

## 참고1

## 표준화 유형 군별 사업목록 (복지부)

유형 군	해당 사업
(1유형군) 기초생활보장사업군 (2개)	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사업
(2유형군) 차상위사업군 (4개)	차상위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 자활 근로 사업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계층확인 사업
(3유형군) 기초연금형 사업군 (2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4유형군) 바우처형 사업군 (15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 소득

구분			1유형군(78)					2유형군(35)	3유형군(22)	4유형군(14)	
종	소	세목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	○	○	○	○	○	○	
	일용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	○	○	○	○	○	×	×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	○	○	○	○	○	×	×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참여소득	노인일자리사업참여소득	○	○	○	○	○	○	×	×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소득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소득	○	○	○	○	○	○	×	×
		공공근로소득	공공근로소득	○	○	○	○	○	○	×	×
사업소득	농업소득	농업소득	○	○	○	○	○	○	×	×	
		축산소득	○	○	○	○	○	○	○	×	×
	임업소득	임업소득	○	○	○	○	○	○	×	×	
	어업소득	어업소득	○	○	○	○	○	○	×	×	
	기타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	○	○	○	○	○	○	
재산소득	임대소득	임대소득	○	○	○	○	○	○	○	○	
	이자소득	이자소득(국세청)	×	×	×	×	○	×	×	○	
		이자소득(금융기관)	○	○	○	○	×	○	○	×	
		배당소득(금융기관)	○	○	○	○	×	○	○	×	
		이자소득(합계)	○	○	○	○	×	○	○	×	
	연금소득	연금(개인)소득	○	○	○	○	○	○	○	×	
		주택연금	○	○	○	○	○	○	×	×	
농지연금		○	○	○	○	○	○	×	×		
기타소득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	○	○	×	×	×	×	
		무료임차료(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	○	○	○	○	×	×	×	×	
		외국인 배우자 소득	○	○	○	○	×	×	×	×	
		무료임차료(장애인연금·기초연금)	×	×	×	×	×	×	○	×	
	부양비	부양비	×	×	×	×	×	×	×	×	
		기초생계급여부양비	○	×	×	×	×	×	×	×	
		기초의료급여부양비	×	○	×	×	×	×	×	×	
	공적이전소득	국가유공자급여(보상금)	○	○	○	○	○	○	○	○	×
		국가유공자급여(간호수당)	○	○	○	○	○	○	×	×	×
		국가유공자급여(무공영예수당)	○	○	○	○	○	○	×	×	×
국가유공자급여(기타)		○	○	○	○	○	○	○	○	×	
독립유공자급여(보상금)		○	○	○	○	○	○	○	○	×	
참전명예수당		○	○	○	○	○	○	×	×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	○	○	○	○	○	×	×	×	
국민연금급여		○	○	○	○	○	○	○	○	○	
사학퇴직연금급여		○	○	○	○	○	○	○	○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	○	○	○	○	○	○	○	
군인퇴직연금급여		○	○	○	○	○	○	○	○	○	
별정우체국연금		○	○	○	○	○	○	○	○	○	
실업급여		○	○	○	○	○	○	○	×	○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	○	○	○	○	○	○	○	○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	○	○	○	○	○	○	○	○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	○	○	○	○	○	○	○	○		
산재보험급여(상병보상금)	○	○	○	○	○	○	○	○	○		

구분		1유형군(78)					2유형군	3유형군	4유형군	
종	소	세목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35)	(22)	(14)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	○	○	○	○	×	×	×
		장애수당	○	○	○	○	○	×	×	×
		장애아동수당	○	○	○	○	○	×	×	×
		소년소녀가정지원금	○	○	○	○	○	×	×	×
		아동양육비(한부모)	○	○	○	○	○	×	×	×
		입양아동양육수당	○	○	○	○	○	×	×	×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	○	○	○	×	×	×
		지자체지원(이·통장직책수당)	○	○	○	○	○	×	×	×
		지자체지원(출산·고령화관련수당)	○	○	○	○	○	×	×	×
		지자체지원(교통수당)	○	○	○	○	○	×	×	×
		지자체지원(보훈대상자추가지원)	○	○	○	○	○	×	×	×
		지자체지원(복지대상자추가지원)	○	○	○	○	○	×	×	×
		직업훈련수당	○	○	○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	○	○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피부양보조금)	○	○	○	○	○	×	×	×
		장애인연금	○	○	○	○	○	×	×	×
		양육휴직수당	○	○	○	×	○	○	×	×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	○	○	○	○	×	×	×
		진폐위로금	○	○	○	○	○	×	×	×
		추가아동양육비(한부모)	○	○	○	○	○	×	×	×
		자립지원촉진수당(한부모)	○	○	○	○	○	×	×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	○	○	○	○	×	×	×
		국가유공자급여(부양가족수당)	○	○	○	○	○	×	×	×
		국가유공자급여(중상이부가수당)	○	○	○	○	○	×	×	×
		대일항쟁기피해자(희생자) 의료지원금	○	○	○	○	○	×	×	×
		석면피해자요양생활수당	○	○	○	○	○	×	×	×
		기초연금	○	○	○	○	○	○	×	×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	○	○	○	○	×	×	×
		발농사직접지불보조금	○	○	○	○	○	×	×	×
		경영이양 소득보조금	○	○	○	○	○	×	×	×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	○	○	○	○	×	×	×
		진폐보상연금	○	○	○	○	○	○	○	×
		진폐유족연금	○	○	○	○	○	○	○	×
		체육유공자연금수당	○	○	○	○	○	×	×	×
		공적이전(기타지원)	○	○	○	○	○	×	×	×
	국외기타소득	국외기타소득	○	○	○	○	○	×	×	×
보장기관 확인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	○	○	×	×	×	×



□ 재산

구분			1유형 (46)					2유형 (42)	3유형 (40)	4유형 (21)
종	소	세목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일반재산	건축물	건축물(건물)	○	○	○	○	○	○	○	○
		건축물(시설물)	○	○	○	○	○	○	○	○
		건축물(기타)	○	○	○	○	○	○	○	○
	주택	주택	○	○	○	○	○	○	○	○
	토지	토지(밭)	○	○	○	○	○	○	○	○
		토지(논)	○	○	○	○	○	○	○	○
		토지(대지)	○	○	○	○	○	○	○	○
		토지(임야)	○	○	○	○	○	○	○	○
		토지(기타)	○	○	○	○	○	○	○	○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	○	○	○	○	○	○	○
		상가보증금	○	○	○	○	○	○	○	○
	선박/항공기	선박	○	○	○	○	○	○	○	○
		항공기	○	○	○	○	○	○	○	○
	동산	가축	○	○	○	○	○	×	×	×
		종묘	○	○	○	○	○	×	×	×
		기계,기구류	○	○	○	○	○	×	×	×
		기타	○	○	○	○	○	×	×	×
		건설기계	○	○	○	○	○	○	×	×
	어업권	어업권	○	○	○	○	○	○	○	×
	입목재산	입목재산	○	○	○	○	○	○	○	×
	조합입주권	조합원입주권	○	○	○	○	○	○	○	○
	분양권	분양권	○	○	○	○	○	○	○	○
	회원권	골프회원권	○	○	○	○	○	○	○	○
		콘도미니엄회원권	○	○	○	○	○	○	○	○
		승마회원권	○	○	○	○	○	○	○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	○	○	○	○	○	○
		요트회원권	○	○	○	○	○	○	○	○
기타(증여)재산	기타(증여)재산_일반	○	○	○	○	○	○	○	×	
금융재산	기타(증여)재산_금융	○	○	○	○	○	○	○	×	
금융재산	금융재산	요구불예금	○	○	○	○	○	○	○	×
		저축성예금	○	○	○	○	○	○	○	×
		증권거래	○	○	○	○	○	○	○	×
		보험증권	○	○	○	○	○	○	○	×
		1년이내지급된 보험금	○	○	○	○	○	○	○	×
		비상장주식	○	○	○	○	○	○	○	×
	기타일시금	국민연금급여(반환일시금)	○	○	○	○	○	○	○	×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	○	○	○	○	○	○	○	×
		보훈대상자보상급여(사망일시금)	○	○	○	○	○	○	○	×
		사학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	○	○	○	○	○	×
		별정우체국연금(퇴직일시금)	○	○	○	○	○	○	○	×
		산재보험급여(사망일시금)	○	○	○	○	○	○	○	×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	○	○	○	○	○	×	×
공무원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	○	○	○	○	○	×		
기타일시금	○	○	○	○	○	○	○	×		
자동차	자동차	○	○	○	○	○	○	○	○	
주거용재산	주거용재산	○	○	○	○	○	○	×	×	
고급재산	고급차 및 회원권	×	×	×	×	×	×	○	×	

□ 공제

종	소	구분 세목	1유형 (46)					2유형 (27)	3유형 (6)	4유형 (3)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소득공제	가구특성별지출	장애수당	○	○	○	○	○	×	×	×
		장애아동수당	○	○	○	○	○	×	×	×
		고엽제후유증 중 중증장애인수당	○	○	○	○	○	×	×	×
		소년소녀가정지원금	○	○	○	○	○	×	×	×
		아동양육비(한부모)	○	○	○	○	○	×	×	×
		입양아동양육수당	○	○	○	○	○	×	×	×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	○	○	○	○	×	×	×
		만성질환자 3개월이상 지출의료비	○	○	○	○	○	○	×	×
		중고등학생 입학료 및 수업료	×	×	×	×	×	○	×	×
		국민연금 본인분담보험 75% 감면	○	○	○	○	○	○	×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	×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	○	○	○	○	○	×	×
		보육료, 유치원 교육비, 대학생 학비	×	×	×	×	×	×	×	×
		근로무능력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의 40%	×	×	×	×	×	×	×	×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한 채무변제액	×	×	×	×	×	×	×	×
		장애인연금	○	○	○	○	○	×	×	×
		부양의무자교육비표준공제	×	×	×	×	×	×	×	×
		추가아동양육비(한부모)	○	○	○	○	○	×	×	×
		자립지원촉진수당(한부모)	○	○	○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피부양보조금)	○	○	○	○	○	×	×	×
		부양의무자의본인거주용 월세	×	×	×	×	×	×	×	×
		요양기관이용료 및 생활시설유료실비이용료	×	×	×	×	×	×	×	×
		희귀난치성질환자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	○	○	○	○	○	×	×
		만성질환자 3개월이상 지출 의료비 및 간병기관 간병단체 간병비	×	×	×	×	×	×	×	×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등	×	×	×	×	×	×	×	×
		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	×	×	×	×	×	×	×	×
		국제경기대회 입상 장애인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	○	○	○	○	×	×	×
		이자소득공제	○	○	○	○	×	×	○	×
		학자금대출 채무변제액	×	×	×	×	×	×	×	×
		임대소득 경비율 공제	×	×	×	×	×	×	○	×
		참전명예수당	○	○	○	○	×	×	×	×
		12개월 초과 이자소득 추가공제분(국기초, 차상위)	○	○	○	○	×	○	×	×

구분			1유형 (46)					2유형 (27)	3유형 (6)	4유형 (3)
종	소	세목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장애인기능올림픽 입상자 기능장려금	○	○	○	○	○	○	×	×
		가구특성별지출기타	○	○	○	○	○	○	×	×
	근로소득공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	○	○	○	○	○	×	×
		행정인턴	○	○	○	○	○	○	×	×
		(노인)상시근로소득	×	×	×	×	×	×	○	×
		만18세미만 청소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	×	×	×	×	×	○	×	×
		만65세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	○	○	○	○	○	×	○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	○	○	○	○	○	×	○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	○	○	○	○	○	○	×	×
		만24세 이하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	×	×	×	○	○	×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근로 및 사업소득	○	○	○	○	○	○	×	×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 예비역 근로 및 사업소득	○	○	○	○	○	○	×	×
		자립적립금(시설수급자)	○	○	○	○	○	×	×	×
		(맞춤형)만24세 이하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	○	○	○	×	×	×	×
		(국기초, 차상위, 한부모)학생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	○	○	○	○	○	○	×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등록금 지출	○	○	○	○	○	○	×	×	
	농어민가구특별공제	보육료(농어민가구)	○	○	○	○	○	○	×	×
		대출상환액중 이자비용50%	○	○	○	○	○	○	×	×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1ha미만	○	○	○	○	○	×	×	×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	○	○	○	○	×	×	×
		발농사직접지불보조금	○	○	○	○	○	×	×	×
		경영이양 소득 보조금	○	○	○	○	○	×	×	×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	○	○	○	○	×	×
일반재산공제	농어민가구특별공제	500만원 이내의 농지, 가축, 종묘, 농기계 등	○	○	○	○	○	○	×	×
		일반재산 자연감소분	○	○	○	○	○	○	○	×
금융재산공제	장기저축	장기저축	○	○	○	○	○	○	×	×
	생활준비금	생활준비금	○	○	○	○	○	○	×	×
	자연감소분	금융재산 자연감소분	○	○	○	○	○	○	○	×
	한센인피해자 국가보상금	한센인피해자 국가보상금	○	○	○	○	○	○	○	×

□ 부채

구분			1유형(7)					2유형(6)	3유형(7)	4유형(0)	
종	소	세목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부채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	○	○	○	○	○	○	○	×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	○	○	○	○	○	○	×
		신용카드 연체금	○	○	○	○	×	×	×	○	×
		자동차 할부금	×	×	×	×	×	×	×	×	×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	○	○	○	○	○	○	×	×
		임대보증금(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	×	×	×	×	×	○	×
	개인간사채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	×	×	×	×	×	×	×	×	×
		법원인정사채	○	○	○	○	○	○	○	○	×
	공공기관대출금	농지연금	○	○	○	○	○	○	○	○	×
		주택연금	○	○	○	○	○	○	○	○	×
	국외부채	국외부채	×	×	×	×	×	×	×	×	×